

건설VE 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

2010. 2. 18개정

2012. 1. 27개정

2012. 9. 25개정

2021. 5. 26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VE활성화 및 국내 최고 수준의 건설VE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건설프로젝트의 가치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관련근거)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한국건설VE연구회 정관 제26조의 1항(특별위원회)에 근거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VE전문가 양성교육”(이하 ‘교육’이라한다)이라 함은 국내 VE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과정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② “VE전문 자격인증”(이하 ‘인증’이라한다)이라 함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검정을 거쳐 자격을 인증함을 말한다.

제 2 장 교 육

제 4 조(교육과정) “VE 일반과정”, “VE 전문 기본과정”, “VE 전문 고급과정”, “VE학점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VE 일반과정”은 VE팀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VE개론, 수행절차, 실지사례 및 부분적 워크숍을 24시간 동안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VEM(VE관리사, Value Engineering Member)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VE 전문 기본과정”은 VE팀 리더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VE개론, 수행절차, 응용기법 및 VE Job Plan 단계별 워크숍을 40시간 동안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공인된 유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AVP(VE지도사, Associate Value Engineering Professional)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CVP 자격 취득을 위한 VE 전문 고급과정에 입과할 수 있다.

③ “VE 전문 고급과정”은 VE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VE 전문 기본과정 수료자에게 기능분석, 창조성, 역동적 팀 운영, 관련 기법 등을 32시간 동안 심도 있게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공인된 유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CVP(VE전문가, Certified Value Engineering Professional)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VE학점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과정에서 1학기 2학점 이상으로 VE과목을 제 6조 ③항의 기준에 따라 개설하고 CVP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 공인VE자격자가 강의한 경우 “VE 일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VEM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5 조(신청자격)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VE 일반과정”은 만 20세 이상인 자

② “VE 전문 기본과정”은 연구 활동 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③ “VE 전문 고급과정”은 연구 활동 또는 실무 경력 4년 이상이면서 “VE 전문 기본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공인된 유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제 6 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과정별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VE 일반과정”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편찬한 교재에 의거 강의식으로 실시한다.

② “VE 전문가 기본과정” 및 “VE 전문가 고급과정”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편찬한 교재에 의거, 이론과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팀별 실습을 50%씩 실시한다.

③ VE학점과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과목을 개설한다.

(단위 : 시간)

과목명	시간(이상)	과목명	시간(이상)	계
VE기본이론	4	간이워크숍	8	24
VE추진절차	4	VE제도 및 인증	2	
VE추진단계별 활동내용 및 응용기법	4	종합발표	2	

※ 과정소개, 평가, 학교별 특화교육 8시간(이상) 별도

※ 간이 워크숍은 VE Job Plan 6단계 중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창출 및 평가단계까지를 간단한 대상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함.

④ 실습 대상 프로젝트 등은 해당 강사가 교육생의 구성분포에 따라 적절히 선정한다.

⑤ “VE학점과정”을 “VE 일반과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③항의 기준에 따라 수업계획서와 강사이력서를 (사)한국건설VE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과정에 대하여는 제7조 ⑤항에 의거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⑥ “VE학점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수여 받은 자가 (사)한국건설VE연구원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추가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VE 전문 기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하여 AVP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위 : 시간)

과목명	시간(이상)	과목명	시간(이상)	계
기능분석단계 실습	4	개발 및 제안단계 실습	4	16
창조 및 평가단계 실습 응용기법	4	LCC	4	

제 7 조(학사관리) 학사관리는 교육의 질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여 80%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미달 시는 유급 조치한다.

② 과정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단, 국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본 연구원 회원 등에게는 할인해줄 수 있다.

- ③ 수료에 앞서 평가를 실시하며 “VE 전문 과정”은 실습결과를 단계마다 발표 및 토의토록 하여 소기의 수준을 유지시킨다.
- ④ 정부 수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력관리 필수과정으로 활용토록 하고 노동부 환급을 통해 경비를 경감토록 추진한다.
- ⑤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특히 “VE 전문 기본과정” 또는 “VE 전문 고급과정”을 ~SAVE International 로부터 인가받은 강사가 인가받은 내용대로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SAVE 모듈 I 수료증” 또는 “~SAVE 모듈 II 과정 수료증”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 ⑥ “VE 전문 기본과정” 수료 후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VE 전문 고급과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 3 장 인 증

제 8 조(인증의 종류)

건설 VE 자격인증은 역량 발휘에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VEM(건설 VE 관리자, Value Engineering Member) - 본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24시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VE 일반과정” 또는 동등 이상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인증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② AVP(건설 VE 지도사, Associate Value Engineering Professional) - 본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40시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VE 전문 기본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공인된 유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인증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③ CVP(건설 VE 전문가, Certified Value Engineering Professional) - 본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VE 전문 기본과정”과 32시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VE 전문 고급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공인된 유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인증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제 9 조(검정신청자격)

- ① VEM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VE 일반과정” 또는 동등 이상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한다.
- ② AVP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VE 전문 기본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공인된 유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워크샵 경력 3개,

연구 활동 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CVP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VE 전문 기본과정”과 “VE 전문 고급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공인된 유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워크숍 경력 12개, 연구 활동 또는 실무 경력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 10 조(자격 인증위원회)

자격인증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자격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본 연구원 임원, 교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으로서 VE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 ④ 인증위원회는 VE 자격검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 ⑤ 인증위원장은 자격검정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인증위원은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인증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토록 할 수 있다.
-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비상근,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형료 등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자격검정 방법 및 절차) 자격검정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자격인증을 위한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과 심층 면접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검정은 해당 자격인증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검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 ③ 자격인증 위원장은 출제, 시험관리, 채점, 면접과 관련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합격 사정기준은 대상 인원에 불구하고 과목당 70% 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
- ⑤ 시험문제, 답안 내용, 채점결과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자격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시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기타 출제, 응시, 채점 및 사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인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국제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지식과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격인증자의 등록 및 관리

제 12 조 (VE 전문 자격인증 등록)

제 11 조의 자격검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VE 전문 자격을 인증 받은 자는 본 연구원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은 “VE 전문 자격인증서”를 교부한다.

제 13 조 (VE 전문 자격 인증자의 관리)

제 12 조에 따라 본 연구원 사무국에 등록한 VE 전문자격 인증자는 경력 및 실적을 별도 관리하며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 14 조 (VE 전문 자격 인증자의 권리)

제 12 조에 따라 본 연구원 사무국에 등록한 VE 전문자격 인증자는 본 연구원의 각종 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VE프로젝트 수행 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15 조(VE 전문 자격 인증자의 의무)

① 제 11 조에 의거 자격인증을 받은 자는 매 4년마다 별도의 "건설VE전문가(CVP)재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제 16 조(기타 협의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교육은 과정별 교육이수시간 별로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